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1920~30년대 여성 이혼과 빈곤문제*

소현숙**

「차례」

머리말

1. 1920~30년대 빈곤상황과 여성 이혼의 실태
 - 1) 빈곤의 심화와 이혼의 양산
 - 2) 여성 이혼에 나타난 빈곤과 젠더문제
2. 이혼여성의 생계와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
 - 1) 타인에의 의탁
 - 2) 노동을 통한 자립
3. 이혼여성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법정소송
 - 1) 부양의 요구
 - 2) 재산권의 자각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근대적 이혼 제도와 관념이 확산되어 간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이혼 여성의 빈곤 실태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해보았다.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던 식민지배 하에서 이혼은 더 이상 하층의 문화가 아니었다. 식민지 경제정책의 결과 심화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빈곤상황에서 하층의 이혼이 양산되었다면, ‘자유이혼’의 유행 속에서 중상층에서도 이혼이 속출하였다. 남성에게 이혼이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는 계기가 아니었던 것과 달리, 여성에게 이혼은 경제적 궁핍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성차별적이었던 당시의 성규범과 법제도, 노동시장의 구조는 이혼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기능했다.

이혼여성들은 회피할 수 없었던 이러한 빈곤의 현실에 대응하여 생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행하였다. 재혼이나 첩살이, 공장노동자, 행상, 어멈, 유치원 보모 등 그들의 선택지는 달랐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선택 이면에는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자존을 위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한편 생계를 위한 적극적인 추구 속에서 여성들은 부양료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법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 속에는 당시 식민지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산분할 요구 또한 반영되어 있었다. 겹겹이 에워싼 젠더불평등 속에서 이혼 여성은 단지 죽지 못해 산 ‘희생자’로 남아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과 자존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핵심어: 이혼, 이혼여성, 빈곤, 여성노동, 재혼, 위자료청구소송, 부양료청구소송, 1920~30년대

“조금 있자 한 삼십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급사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문턱에 가 멀쩡암치 서서는 어릿어릿하고 사방을 둘러본다. 뚝섬집은 제가 데려갈 사람의 아래우를 훑어본다. 키는 멀숙하게 큰데 아무 특증이 없는 얼굴은 병든 누에 모양으로 누렁게 들뜨고 눈두덩은 울고 난 사람처럼 푸석푸석하다....더부살이감은 아무말 없이 옷 보통이 하나를 끼고 뚝섬집의 뒤를 따라섰다. 그저 아침도 못 얻어 먹은 듯 기신이 하나도 없이 흐느적거리며 배불뚜기 여편네를 무작정하고 따른다. 월급이야 반건 말건 위선 당장에 주린 창자를 채우기가 급한 눈치다.”(심훈, 『직녀성』 1937)

머리말

심훈의 소설 『직녀성』에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과 헤어져서 “소박택이 천덕군이 대접”을 받으며 일가를 전전하다가 직업소개소에서 남의집살이로 팔려가는 이혼여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¹⁾ 축첩과 자유연애로 이혼당한 ‘구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 소설에서 여성에게 이혼은 그야말로 “주린 창자”를 움켜쥐어야 하는 ‘궁핍한 삶’으로 묘사된다. 소설에서처럼 식민지시기 이혼은 여성에게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빈곤과 직결된 문제였다. 재산분할 등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성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가난 때문에 오히려 이혼하고자 했던 하층 여성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혼이 빈곤한 삶으로부터 그들의 탈출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혼여성에게 빈곤은 계층을 막론하고 엄습하는 현실이었다. 그런 면에서 심훈의 묘사는 당대 이혼여성들이 직면해야 했던 현실의 한 단면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남성들에게 이혼은 씻을 수 없는 낙인도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는 계기도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러한 이혼여성의 빈곤경험은 젠더불평등이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이 제시하듯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가족 내 성역할, 성차별적 법제도와 일상문화 등에 의해 남성에 비해 더 큰 빈곤 위험에 직면해 왔다.²⁾ 따라서 여성에게 빈곤은 단순히 계급적 착취의 산물이 아니라 젠더차별이 복합적으로 연루된 결과였다.

그렇다면, 식민지시기 이혼 여성들은 빈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는

-
- 1) 심훈, 『직녀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한국현대소설총서 22) 직녀성』 한국문화사, 1987, 재간행 판본, 346~348쪽.)
 - 2) 오늘날에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재은,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권 2호, 2004.5, 174쪽.

가? 그리고 이들의 빈곤에 젠더위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여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빈곤을 타개하고자 했었는가? 이 글에서는 근대적인 이혼제도와 관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간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이혼 여성들의 빈곤실태를 살펴보고,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취하였던 대응방식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시기 사회·문화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겹겹이 쌓여 있던 젠더불평등의 요소가 여성의 빈곤문제에 어떻게 연루되고 있었는지를 젠더사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식민지시기 이혼에 관해서는 법제도사 및 사회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이에 따르면 근대적 이혼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식민지시기에 이혼은 일상의 영역에서 가시화되고 있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도입·정비되고, 여성에게 이혼청구권이 부여되는 한편, ‘자유이혼’의 관념이 유포되는 등 이혼의 제도와 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이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되었지만, 이혼여성의 이혼 후의 생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3) 이태영, 『韓國離婚制度研究-특히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원, 1957; 정광현, 『韓國家族法研究』 서울대출판부, 1967; 이태영, 『한국여성의 법적 지위』 『한국여성사(개화기~1945)』 이대출판부, 1972; 서병한·한상욱, 『한국 법제사상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천』 『여성문제연구』 12,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83; 홍양희, 『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민법』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 2005; 정주영, 『식민지시기 이혼소송의 법 적용 실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8; 吉川 絢子, 『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1910년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44호, 2011; 강병식,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및 출산 실태 연구』 『사학지』 제28집, 1995; 김경일, 『이혼의 추이와 실태』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소현숙,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 『사학연구』 제104호, 2011;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권희정, 『식민지시대 한국 가족의 변화: 1920년대 이혼소송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1집 2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5; 소현숙, 『정조유린담론의 역설, 1920~30년대 정조유린위자료청구소송과 정조담론』 『역사문제연구』 28호, 2012;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박사학위논문, 2013; 소현숙, 『고독한 외침-식민지시기 아내/며느리에 대한 ‘사형(私刑)’과 법정투쟁』 『역사비평』 104, 2013 등.

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식민지시기 빈곤의 문제는 이제까지 노동자나 농민, 도시빈민 등 계급적으로 하층인 사람들의 문제로서만 취급되어왔고⁴⁾ 그것에 젠더위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급적 차원뿐만 아니라 젠더적 차원에서 빈곤이 남녀의 삶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이혼이라는 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이혼은 여성 빈곤의 원인이기도 하고 여성 빈곤의 결과이기도 했다. 심훈의 소설에서처럼 중상층 여성에게 이혼이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안정적 지위의 박탈과 그에 따른 빈곤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하층 여성들에게 이혼은 주어진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혼의 의미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들의 계층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의 이혼에서 나타났던 ‘젠더에 의해 구조화 된 빈곤’의 양상에 주목해 보고, 그러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재혼, 첩살이, 노동, 법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혼여성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희생자 관점에서 벗어나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이혼여성의 모습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혼’은 법적 이혼으로 한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식민지 시기는 근대적 이혼제도가 법적으로 성립해 갔지만, 이에 포괄되지 않는 비법률적 이혼도 광범하게 나타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2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령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신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30년대 내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연령의 조혼⁵⁾이나 법률적으

4) 대표적으로 강만길, 『일제 강점기 빈민생활사』 창작과비평사, 1987을 들 수 있다.

5) 조선총독부는 1915년부터 결혼연령 미달자의 결혼을 행정적으로 제한하여 남 17

로 신고하지 않는 사실혼관계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이혼 역시 법적인 방식이 아닌 가출이나 도망, 棄妻와 소박 등 비법률적인 방식으로도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⁶⁾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적인 이혼뿐만 아니라 비제도적 이혼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광범한 의미에서 이혼을 다룰 것이다.

1. 1920~30년대 빈곤상황과 여성 이혼의 실태

1) 빈곤의 심화와 이혼의 양산

1935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에는 애써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은 오히려 빚뿐인 상황에서 결국 부부가 각자 살길을 찾아 헤어지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밤마다 안해와 마주안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이며 가튼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미는 별 뽕죽한 수는 업섯다.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가튼데 아고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기퍼서 코를 골며 자는 안해를 깨웠다...나는 오십사원을 갑흘길이 업스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게 아니겄고 서루 의론하야 어굴치안토록 분배하야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닫고 밋 구멍으로 세식구 빠져나왔다....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안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안해에게. 그러자 어느날 밤 안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래는 살을 여인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아간 한구

세 미만, 여 15세 미만인 자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187쪽.

6)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박사학위논문, 2013, 86~108쪽.

석에서 섬을 두르고 언내에게 젓을 먹이고 떨고 잇드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나까 그말이 이리다간 우리도 고생일뿐더러 첫때 언내를 잡겠수, 그러니 서루 갈립시다 하는 것이다. 하긴 그럴법한 말이다. 쥐뿔도 업는 것들이 붙어단긴대짜 별수는 업다. 그보담은 서루 갈리어 제맘대로 빌어 먹는 것이 오히려 가뜩하리라. 그는 선뜻 응락하였다.”⁷⁾(강조는 인용자)

소설에서 1930년대 농촌에서 유리된 하층민의 빈곤상황은 가족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김유정의 묘사는 단순히 소설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종 이와 비슷한 하층민의 이혼상황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장봉영과 그의 아내는 “우리의 두 부부의 정의는 말할 수 없이 두터우나 우리 집의 정황이 이와 같이 살수 없으니 같이 살면 종말에는 죽을 수밖에 도리가 없는 즉 이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며 이혼에 합의하고 있다.⁸⁾ 신문에 보도된 농촌의 극에 달한 궁핍 속에서 생존의 도모를 위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층민의 모습은 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농촌에 불어 닥친 이러한 심각한 빈곤상황은 식민지 경제정책의 전개에 따른 하층민의 전반적인 경제적 몰락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듯이, 식민지화 이후 진행된 일제 당국의 토지정책,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삶을 피폐화시켰다. 1910년대 일제에 의해 강행된 ‘土地調査事業’은 토지의 자본주의적 배타적 소유제를 확립시키고 지주경영을 강화시켰다. 또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사업과 저곡가정책 등 식민지 농업정책은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등 농촌 중간층이 몰락하고 소작농민이 급격히 증가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소작농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인 농업 이민의 증가·자본주의적 영리

7) 김유정, 「만무방」 『조선일보』 1935.7.17.~30(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07, 99~100쪽)

8) 「기근에 못이기에 이혼문제를 제기」 『조선일보』 1925.3.26.

를 추구하는 농장형 지주경영의 등장은 소작농민들의 경작면적의 감소, 소작료의 급격한 고율화, 영구소작제에서 계약소작제로의 변경에 따른 소작권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소작농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20~30년대 전체 농촌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농민들이 빈민화하여 細窮民의 신세로 전락하였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농촌의 빈민들은 생존을 위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⁹⁾ 그러나 식민지시기 농촌 빈민의 이농 현상은 도시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형성에 의한 노동력 흡인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농촌 내부에서 생산수단을 잃고 노동자적 처지에 빠진 농민들의 실업, 빈민화, 파산에 따른 이른바 밀어내기식의 이농이었다. 따라서 농촌을 떠난 인구는 도시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지역의 토막민, 혹은 전국 각 지방의 토목공사장의 날품팔이 노동자로서 겨우 생계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남아 있었다.¹⁰⁾

이러한 농민층의 전반적인 몰락과 빈민화 과정 속에서 하층민들은 가족해체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혼은 그 귀결이었다. 이혼은 아내에게는 ‘새로운 보호자’ 곧 새로운 남편을 구하여 생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었고, 남편에게는 처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¹¹⁾ 당시 언론이 농촌경제 피폐상을 보도하면서 “각기 생명을 도모하기 위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생활난”으로 인해 “이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하였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¹²⁾ 또, 1920년대 후반 이후 여성들의 이혼청구원인으로 <악의 유기>가 증가해갔던 것¹³⁾ 역시 생활난으로 인한 이혼 증가의 현상을 보여준다.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유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악

9) 강만길, 앞의 책, 제1장 참조.

10) 강만길, 앞의 책, 제2~5장 참조.

11) 소현숙, 박사학위논문, 70쪽.

12) 『결혼통계가 말하는 경북 농촌피폐상』 『조선일보』 1935.2.20.; 『이혼홍수, 십일간 삼십건 생활난이 대원인』 『조선일보』 1935.4.25.

13) 소현숙, 박사학위논문, 130~132쪽.

의유기가 증가했던 것은 1920년대 말 해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石黑英雄의 말처럼, “남편이 타지로 나가서 수년이 되도록 연락 두절”되어,¹⁴⁾ 생활고 속에서 결국 이혼을 청구하게 된 여성들이 증가해 간 상황을 반영한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남편들의 이주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점차 만주나 일본과 같은 국외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던 1920~30년대의 상황은¹⁵⁾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2) 여성 이혼에 나타난 빈곤과 젠더문제

1936년 7월 잡지 『비판』에 게재된 백신애의 소설 『빈곤』에는 농촌 빈곤층의 궁핍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만삭으로 “해산이 오늘 내일로 임박하였는데 남편은 집안에 단 하나 남은 술을 들고 나간 지 사흘이 되어도 소식이 없고 입에 넣을 것이라고는 찬물밖에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인근 농장에 가서 일하다가 밭 가운데서 애를 낳을 정도로 빈곤의 상황은 비참하다. 소설에서 주인공 옥계덕은 아내가 해산한지도 모르고 며칠 만에 들어와 산모 먹으라고 농장 주인이 마련해준 음식을 다 뺏어먹고 아이도 발로 차 죽이는 남편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렇게 빈곤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 그저 체념과 인내였던 것만은 아니다. 빈곤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은 아내들의 가출·도망, 남편에 대한 이혼요구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1921년 경성부청에 신고 된 이혼의 경향에 관하여 조선일보가 “생활 곤란을 이기지 못하여 이혼하기를 바라는 것은 대개 아내 된 여자 편에서

14) 石黑英雄, 위의 글, 204~205쪽.

15) 문소정, 『일제하 한국농민가족에 관한 연구-1920~30년대 빈농층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80~81쪽.

16) 백신애, 『가난』 『비판』 1936.7(전은경 편, 『백신애·지하련 작품선』 글누림, 2011.)

문제를 많이 일으키며 생활 곤란 이외에는 거의 다 남자에게서 이혼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도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¹⁷⁾ 물론 최소한의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¹⁸⁾, 대체로 하층민에서 이혼은 여성이 먼저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1928년 대전 사는 홍순남은 경찰서에 찾아와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열일곱에 시집 온 그녀는 남편이 똑똑치 못하고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¹⁹⁾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이혼요구가 남편과 시부모에 의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결혼 자체가 강제결혼이었기 때문에 이혼 역시 본인이 원한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다.²⁰⁾ 따라서 남편이나 시부모의 반대, 혹은 친정부모의 만류로 인해 여성들은 쉽게 이혼할 수 없었다. 더욱이 가난한 하층 남성들의 결혼난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10년 이상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돈을 모아 어린 여성을 사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매매혼 상황에서 여성에게 이혼의 권리가 쉽사리 주어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여 비판하여 자살하거나, 도망 혹은 가출하는 여성들도 나타났다. 심지어 남편과의 애정이 없고 곤궁한 결혼생활이 싫어서 스스로 몸을 팔아 창기가 된 여성도 있었다.²¹⁾

특히 도망이나 가출은 사실상의 이혼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빈번하게 선택한 방법이었다.²²⁾ 이 시기 가출은 ‘출분(出奔)’이라 일컬어지

17) 「경성부청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이혼신고 비극의 幕」, 『조선일보』 1921.1.18.

18) 「남편에게 버림받고 一歲愛子를 遺棄」, 『동아일보』 1931.7.21.

19) 「길러준 本夫를 財産업다 排斥」, 『동아일보』 1938.4.25.

20) 「부모의 승낙이 절대필요 조선관습에 의하여 경성부청 호적계 이종현씨 담」, 『동아일보』 1927.3.30.

21) 「娼妓로 轉賣시켜 몸값까지 橫食, 생활난 끝에 닥치는 신세 安東에 可憐한 少婦」, 『동아일보』 1935.11.4.

22) 「가난한 男便背叛 다러나다잡혀」, 『동아일보』 1926.11.15.; 「가난한 남편과는 죽어도 살 수 없소, 집을 뛰어나온 젊은 안해」, 『동아일보』 1935.2.21.; 「가난사리 실혀

며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20년대 초반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여성의 가출현상은 1930년대 이르러 보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출을 감행한 여성들은 주로 20세 내외의 농촌 하층 여성들로, 미혼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도 상당수를 점하고 있었다.²³⁾ 가출은 시부모와 남편의 구타와 학대, 남편에 대한 불만과 혐오, 다른 남성과의 정분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기인했지만 생활난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예컨대, 1935년 평양 시내에 거주했던 19세 노산월은 “막별이 노동”하는 남편과 살기 싫어서 경성으로 도망하여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였다. 남편이 경찰에 의뢰하여 찾아냈지만 노산월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다.²⁴⁾

그런데 여성들의 가난한 결혼생활에 대한 거부가 단순히 먹고사는 생존 차원의 문제에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었다. 위 백신애의 소설 『빈곤』에서 묘사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빈곤 한 삶의 이면에는 자주 폭력과 학대, 부덕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복종과 견디기 힘든 노동이 놓여 있었다. 식민지 상황에서 실업과 생활난에서 비롯된 절망감으로 ‘악에 받힌’ 남성들은 그 분노를 아내에 대한 폭력을 통해 해소하였고, 아내는 부덕으로 이러한 남편의 학대를 인내할 것이 요구되었다. 특히 민며느리로 팔려간 어린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노동과 폭력은 ‘며느리 학대문제’가 노동문제에 비견되는 조선사회의 ‘특수문제’라고 거론될 정도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²⁵⁾ 이러한 젠더 폭력 속에서 아내들은 가출, 도망, 이혼을 통해 생존뿐만 아니

서 子息 버리고 逃走(仁川)』 『동아일보』 1935.7.13.; 「막별이 남편과는 죽어도 못살겠소 本町署에 열린 姑婦爭訴」 『동아일보』 1935.4.24.

23) 김명숙, 「일제 강점기 여성 출분 연구」 『한국학논총』 제37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517쪽.

24) 「막별이 남편과는 죽어도 못살겠소 本町署에 열린 姑婦爭訴」 『동아일보』 1935.4.24.

25) 소현숙, 「고독한 외침-식민지시기 아내/며느리에 대한 ‘사형’과 법정투쟁」 『역사비평』 104호, 2013, 389~393쪽.

라 자존을 위한 다른 삶을 꿈꾸었던 것이다.

새로운 삶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은 도시에 대한 동경과 ‘신식 남편’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유정은 그의 수필 『넙히후르러 가시든 님』에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이 도시의 “하이칼라 서방님”에 대한 동경으로 가출을 감행하는 정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때 농촌에서 농민들과 어울리며 생활했던 김유정이 쓴 이 글은 소설이 아니라 수필이라는 점에서 당대 농촌과 농민의 생활상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²⁶⁾ 내용을 보면, 당시 농촌의 여성들은 “잘살고 못살긴 내분복이요, 하이칼라 서방님만 어더주게유”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이칼라 서방님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머리에 기름 발르고 향기 피는 매끈한 서방님이 아닙니다. 돈있고 쌀있고 또 집있고 이러케 푼푼하고 유복한 서울 서방님 말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에이 더러운 계집들! 에이 웃으운것들! 하고 혹 침을 배트실분이 잇슬지는 모르나 그것은 좀 들생각 한것입니다. 님도 조치만 밥도 중합니다. 농부의 계집으로써 한평생 지지리지지리 굶다마느니 서울 서방님겨테안저 밥먹고 웃입고 그리고 잘살아보자는 그 이상이 가질바 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님있고, 밥있고 이러한 곳이라야 행복이 깃드립니다.”²⁷⁾

이렇게 가난한 여성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은 빈곤한 생활, 시부모와 남편의 학대와 폭력, 생활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 대한 좌절감 등에서 비롯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환멸과 도시생활 및 유복한 신식남편에 대한 동경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밥 먹고 옷 입는’ 생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행복이 깃드는’ 삶에 대한 욕망 속에서 여성들은 이혼을 요구하

26) 김유정은 23세 때 춘천으로 내려가 농민들과 어울려 생활하였고, 『조선의 집시』 등 1930년대 농촌의 모습과 농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몇 편의 수필을 남겼다.

27) 김유정, 『넙히후르러 가시든 님』, 『조선일보』 1935.3.6.(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개정판)』 도서출판 강, 2007, 412~413쪽.)

는 데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층 여성의 경우 빈곤이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면 중상층 여성들에게 빈곤은 이혼의 결과였다. 특히 1920~30년대는 하층뿐만 아니라 중상층에서도 이혼이 갑작스럽게 확산된 시기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10년대 말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자유이혼’관념과 그에 따른 ‘자유이혼’의 유행 때문이었다. 부모에 의해 강제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신지식층 남성이 연애결혼을 위해 그들의 조혼한 아내를 버렸던 것이 바로 ‘자유이혼’이었다.²⁸⁾ 조선시대에도 이혼현상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층사회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양반층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다. 기처나 소박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버려지는 여성들도 있었으나, 조선왕조는 결혼을 삼강의 근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규범과 신분질서의 유지를 위해 양반층의 이혼을 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²⁹⁾ 이렇게 전반적으로 억제되어온 중상층에서의 이혼이 1920~30년대 ‘자유이혼’의 유행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갔던 것이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유행병”이라 불렀던 ‘자유이혼’은 조혼한 신지식층 남성 사이에서 상당히 광범하게 나타났는데, 충북 보은의 한 마을에서는 200여호의 작은 마을에서 이혼만 10여건에 달할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었다.³⁰⁾ 이러한 자유이혼의 유행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한 여성들이 다수 양산되었다.

한편, 축첩이 용인되고 남성의 간통은 처벌하지 않았던 성적으로 불평등한 상황,³¹⁾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력 속에서 남편의 축첩이나 외도로

28) 소현숙,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 『사학연구』 제104호, 2011, 134~136.

29)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229~237쪽; 정혜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현실』 제75호, 2010, 93~94쪽.

30) 「청년의 이혼성행으로 신교육을 거부, 과도기의 일현상」 『조선일보』 1929.12.15.

31) 축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관습적으로 용인되었고, 법적 이혼의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 간통죄는 남편의 간통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극도로 불평등한 것이었다. 소현숙, 박사학위논문, 219~223쪽.

인해 혹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버려지거나 이혼을 당하는 여성들도 자주 나타났다. 조선시대에는 축첩이나 無子가 본처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었다. 첩과 처의 위계는 분명 하였고 본처에게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에 이르러 법률혼주의의 도입으로 처첩 간의 지위 격차는 점차 모호하게 되었고³²⁾ 축첩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처첩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축첩이나 無子는 보다 빈번하게 이혼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하층 여성들이 이혼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중상층 여성들에게 이혼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였다. 남성에게 자유이혼은 연애와 결혼이 일치하는 ‘신가정’을 수립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여성에게 자유이혼은 정절규범이 여전히 완고하게 남아있던 당시 사회에서 그야말로 “생명은 보전하였을망정 여자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했다.³³⁾ 남성은 얼마든지 재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여성이 재혼을 통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삶을 되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젠더 불평등한 법적 상황은 이혼 여성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당시의 식민지 법적 상황 하에서 여성에게 이혼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시집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이었다. 나경석 본처의 사례처럼 아들의 자유이혼을 반대한 시부모가 소박맞은 며느리를 위해 기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생

32) 1923년 7월 법률혼주의의 도입은 처첩위계질서의 결정적인 해체를 가져왔다. 호적기제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처첩의 지위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본처의 지위는 호적기제에 의해 결정되는 불안정한 지위가 되었다.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사』 제9집, 2008, 96쪽.

33) 『目下 우리 조선인의 결혼과 이혼문제에 대하여』, 『曙光』 제8호, 1921.1 ‘구여성’의 입장에서 ‘자유이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소현숙, 2011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계를 보장해준 사례도 있었다.³⁴⁾ 그러나 호적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시부모마저 이혼에 동의한 경우 여성들은 의지할 곳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받아줄만한 친정이 없을 경우, 이혼여성은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오갈 데 없는 ‘소박덕이’가 되고 말았다. 1920~30년대에 ‘자유이혼’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여론이 그토록 강하게 나타났던 것은³⁵⁾ 이혼당한 ‘구여성’들이 때때로 직면하였던 이러한 비극적 상황 때문이었다.

2. 이혼여성의 생계와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

식민지시기 언론보도를 통해 본다면 이혼여성이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녹녹치 않은 일이었다. ‘소박덕이’라는 낙인,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에서 비롯한 친정의 외면, 재혼의 어려움, 여성에게 제한적인 노동시장 등 사회·문화적 성차별 구조 속에서 이혼여성들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었다. 이하에서는 ‘타인에의 의탁’과 ‘노동을 통한 자립’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이혼여성들이 선택했던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타인에의 의탁

소박당하거나 이혼한 여성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호구지책이 마련되지

34) 나경석의 본처는 소박 당했지만 정식으로 이혼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호적상의 본처로서의 지위를 유지했고 나경석은 신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이 본처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야 했다. 나영균, 『일제 강점기 우리가족은』 황소자리, 2004, 29~30쪽.

35) 소현숙, 2011 앞의 논문, 134~142쪽.

않은 상태에서 부모나,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자매, 그마저도 없으면 일가친척 등 일단 의지할 수 있는 피붙이에게 몸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정살이는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삶의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친정부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맘 편히 의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가난한 친정의 살림살이는 이혼한 딸이 돌아오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 호구를 줄이기 위해 어린 딸을 돈을 받고 남의 집 민머느리로 파는 것이 당시 하층민 사이에서 관습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³⁶⁾ 소박당하거나 이혼한 딸에게 가난한 친정은 돌아가서 의지할만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돌아온 딸들은 빈한한 친정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존재였고 어서 빨리 재혼을 하든지 남의 집 첩으로라도 들어가 친정살이에서 벗어나길 기대 받는 존재였다.³⁷⁾ 이 때문에 마땅히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시집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갈 곳이 없어서 걸인이 되는 여성들도 있었다.³⁸⁾

한편 중상층 여성들 중에서는 친정이 살만하지만 이혼을 반대한 부모의 낯을 볼 수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혼을 수적으로 알았던 당시에 대개 부모들은 어찌되었건 무조건 참고 살 것을 강요하였다. 심지어 딸이 사위한테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저 참고 살 것만을 훈계하는 것이 당시 친정 부모들이 자주 보여준 태도였다. 예컨대 1921년 평남 평원군 사는 양조실은 사위가 첩을 따로 얻고 딸을 때리고 친정으로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을 불러 앉히고 백방으로 훈계하되 여자라는 것은 한번 다른 가문에 출가하면 죽던지 사던지 시가에 가서 잇는 것이 합당한 것이니 빨리 시가로 가라”고 하였다.³⁹⁾ 이런 상황

36) 김동진, 『결이혼으로 본 조선의 娼態』, 『신동아』 1931.11

37)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남편의 소박बाट과 만리 타향와서 직공생활』, 『동아일보』 1929.11.19.;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남편과 읍바일코 필경에는 일본땅에서 리발관 직공으로 날을 보낸다[上下](高永順)』, 『동아일보』 1929.12.9.; 12.11.

38) 『박정한 시부』, 『조선일보』 1927.6.15.; 『죽은 아이 안고 우는 가련한 걸식 여자, 남편에게 버림 받고 자식 못 버려』, 『조선일보』 1927.9.10.

39) 『女婿가 장인을 구타』, 『동아일보』 1921.10.3.

에서 빈곤하지 않다하더라도 친정은 이혼여성들이 쉽게 의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1926년 함남 북청군의 신씨는 유학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당하여 집에서 쫓겨났으나 친정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시가에 가서 종신하라”고 하여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⁴⁰⁾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는 이혼을 강요하지만 친정부모는 참고 살라고 강권하는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심적 고통을 겪다가 신씨처럼 자살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다수 나타났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⁴¹⁾

친정에도 의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후의 막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재혼이었다. 가난 때문에 이혼을 청구했던 여성들은 보다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며 재혼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체면치레 하는 집안에서는 여전히 ‘일부종사’의 윤리가 강하게 남아 있어 여성의 재혼을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말 재가금지가 철폐되었지만, 중상층에서는 여전히 과부조차도 재혼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⁴²⁾ 따라서 중상층의 이혼여성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27년 진주에서 어느 이혼 여성이 재혼하는 결혼식장 풍경을 보도하였던 별건곤의 기사에 따르면, “離婚하고 돌아온 딸”을 다시 딴 곳에 재혼시키는 부모는 “怪惡한 사람”이라 비난받았다. 결혼식 축사에서 한번 결혼한 여성은 그 결혼이 잘못되더라도 평생 팔자를 고치지 못하는 풍토를 비판하며 재혼을 “신도덕”으로 추켜 세우자, “남을 권하지 말고 제집구석에 가서 시집을 열 두 번씩 가라고 권하려무나...에 고약한 놈의 세상을 다 보겠다”며 비분강개하는 목소리도 들린

40) 『이혼당코 방랑중 산중에서 縊死, 유학생 남편 둔 구여자의 최후』, 『동아일보』 1926.8.18; 『이혼을 한사 불청하든 유학생처 변사!』, 『조선일보』 1926.8.21.

41) 『이혼으로 투강자살, 남편의 강청과 친정의 불허로 이도저도 못하야 마침내 자살』, 『동아일보』 1924.8.23; 『二十歲少婦가 愛女 업고 投江, 가녕불화로 친정을 차저갓다가 부모에게 말듯고 돌아가던 길에』, 『동아일보』 1926.9.11; 『남편의 구박으로 少婦 含怨自殺, 친정에서도 랭대를 맞고, 大同江에 投身』, 『동아일보』 1930.3.31. 등.

42) 소현숙, 『수절과 재가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과부담론』, 『한국사연구』 제164호, 2014, 65~68쪽.

다.⁴³⁾ 따라서 재혼은 비교적 이러한 도덕관념에서 자유로웠던 하층 여성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재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혼여성들은 적당한 곳에 개가지 못하고 다른 남성의 첩이 되기도 했다.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부모의 강요로 첩살이를 하거나 중매장이에 속아 넘어가 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신여성 박호진의 사례는 가난한 부모가 딸을 이혼시키고 부자집 첩살이로 보내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우회 경성지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박호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고학으로 중국에 유학까지 한 신여성이었다. 그녀는 함께 고학하였던 이황과 자유결혼하고 각각 근우회와 신간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박호진의 생부는 딸이 사회운동에 투신한 가난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여 젓 먹이 아이까지 있는 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돈 많은 사람의 첩으로” 가라고 강요하였다.⁴⁴⁾ 또, 1925년 황해도 봉산군의 한창호라는 여성은 본남편과 헤어지고 “어떤 사람의 소개”로 김원필이라는 남성과 동거하였는데, “본시 그리로 갈 때에는 전혀 소개자의 말만 듣고 갔더니 가고 본즉 본처가 있을 뿐 아니라 만 가지의 한 가지도 마음에 합의한 것이 없고 도리어 구박이 날로 심하여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다”며 경찰서에 가서 이혼을 하소연 하였다.⁴⁵⁾

그러나 이들 여성들이 재혼이나 남의 첩이됨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는 불투명하다. 개가하였지만 여전히 “근근히 연명하는 신세” 혹은 “역시 남의 판방살이”를 벗어나지 못하여 비관 끝에 자살한 이혼여성들에 대한 기사⁴⁶⁾는 재혼이나 첩살이가 빈곤으로부터 탈출구가 되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준다. 또, 남의 첩이 된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주지

43) 晋州太守, 『晋州雜話』 『별건곤』 제10호 1927.12

44) 『鶯爪에 翻弄받는 한 雙의 젊은 鴛鴦』 『동아일보』 1927.3.18.

45) 『소부의 이혼소, 남편은 못살겟다고』 『조선일보』 1925.3.26.

46) 『二男二女 뒤두고 流浪女の 自殺, 본남편 버리고 개가하였다 세상이 귀찬어 목매고 자살』 『동아일보』 1926.5.12.; 『生活苦로 轉嫁하던 村婦 血兒 업고 鐵道自殺』 『동아일보』 1927.3.23.

못해서 다시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예컨대, 1928년 경성부 사는 안광렬이라는 여성은 전남편과 헤어지고 “낳은 자식을 기르기 위하여” 남의 첩으로 들어갔으나, 아들을 원하는 남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딸을 낳자 결국 새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말았다.⁴⁷⁾ 첩은 언제든지 버림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였고 버려진다 해도 아무런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의 첩이 된 이혼여성들의 삶이 평탄하기는 쉽지 않았다.

더욱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큰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장봉영의 사례처럼 부부가 헤어지면서 서로 자녀를 맡지 않으려고 다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혼한 부부가 서로 자녀양육을 거부하여 아이를 버리거나 심지어는 살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⁴⁸⁾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는 중상층 이상에서는 이혼하더라도 아이를 시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층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면서 서로 자녀를 맡지 않으려고 미루며 불화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더욱이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전부 소생의 자식은 개가하는 데에서도 걸림돌이 되었다. 이 때문에 개가를 위해 아이를 살해하는 비정한 사건들도 일어났다.⁴⁹⁾ 그리하여 자녀 있는 경우에 심지어 과부라 할지라도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여성의 재혼에 관해 논하면서 신여성 허영숙은 재혼이 “최악”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한다. 즉, “이러한 자녀를 두고 자기 개인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재혼하는 것은 비난할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도덕적 정조를 가진 여자로는 모성애를 최고로 할 것입니다. 無依한 어린 자녀를 버리고 새 남자를 따라가는 것은 아무리 자유니 사랑이니 하는 이유로 분장한다 하더라도 모성애 같은 고급정조가 없고 성욕같은 본능에만 지배받는 淫

47) 「改嫁하고 나서 위자료 請求訴」, 『동아일보』 1928.4.10

48) 「三千里審判臺, 社會의 罪나 父母의 罪나」, 『삼천리』 제4권 제7호, 1932.5

49) 「아기 죽인 이혼녀,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 『조선일보』 1936.2.25.

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⁰⁾ 이렇게 이혼여성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재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자녀를 데려가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안 데려가면 모성애가 없는 여성으로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2) 노동을 통한 자립

재혼이나 남의 첩이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여성들도 있지만, 남편의 학대에 의해 이혼당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직업을 얻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삶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본인을 배우지 못한 “구식여자”라고 지칭하는 이정희는 부모님이 짝 지워준 남편이 학교 선생이 되어 해산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학교 여선생과 연애, 학대를 일삼자 친정으로 돌아오고 만다. 한 두 해 친정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운 이정희는 결국 세 살 먹은 아들을 남편에게 보내고 가난한 친정에 더 붙어 있을 수 없어 독립, 제사 공장에 취직하였다. 집안사람들과 이웃사람들이 “다른 데로 팔자를 고쳐 가서 살라”고 했지만, “다시는 시집이라고는 죽어도 가기가 싫어서” 결국 재혼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였던 것이다.⁵¹⁾ 이러한 결혼에 대한 혐오는 다른 이혼 여성들에게도 광범하게 나타난다. “무식한 여자”는 싫다며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고영순은 결혼을 혐오하면서 결혼을 권하는 사람에 대해 “또다시 시집을 간다면 사형선고보담 더 싫으므로” 직업여성이 되어 노동하는 것을 선택하였다.⁵²⁾

그러나 식민지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을 통한 자립이라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다. 여성에게는 직업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고 불평

50) 『貞操破毀女性的 再婚論』, 『삼천리』 제12호, 1931.2

51)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남편의 소박밭고 만리 타향와서 직공생활』, 『동아일보』 1929.11.19.

52)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남편과 읍바일코 필경에는 일본땅에서 리발관직공으로 날을 보낸다[上下](高永順)』, 『동아일보』 1929.12.9.; 12.11.

등했으며,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는 불안정한 노동이 많았다. 또 대부분 보수는 낮는데 비해 노동환경은 열악했다.⁵³⁾

그렇다면 당시 이혼여성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을까? 통계를 통해 이혼여성들의 업종별 취업상황을 살펴보자.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1930년 현재 전체 여성 취업자는 총 3백32만2천여명으로, 그중 미혼여성은 38만 5천여명, 기혼여성은 2백53만5천여명, 사별은 37만8천여명, 이혼여성은 2만3천여명이었다. 전체 여성취업자 중 이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0.7%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혼녀를 포함한 이들 전체 취업여성의 업종별 종사 상황을 살펴보면, 80%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농수산업에 종사하였고, 광공업에 8.5%, 상업에 6.5%, 가사업에 2.5%, 기타산업이 2%, 공무자유업이 0.5% 등으로 나타난다.⁵⁴⁾ 취업 여성 대다수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중 일부가 공업이나 상업, 가사업에 약간 종사하였으며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혼여성만을 추출하여 이러한 여성취업자의 전체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혼여성들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업이나 공무자유업, 그리고 가사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여타 다른 범주의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⁵⁵⁾ 즉, 미혼이나 기혼, 사별 여성들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60~80%에 이르는 데 비하여 이혼여성은 35.8%에 불과한 반면, 상업은 다른 여성들이 5~10%정도였던 데 비하여 이혼여성은 35%에 육박하였던 것이다. 또한 가사업은 기혼이나 사별 여성이 3% 미만의 소수였던 데 비하여 이혼여성은 미혼여성과 비슷하게 1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⁵⁶⁾ 이혼여성의 취업업종만을 뽑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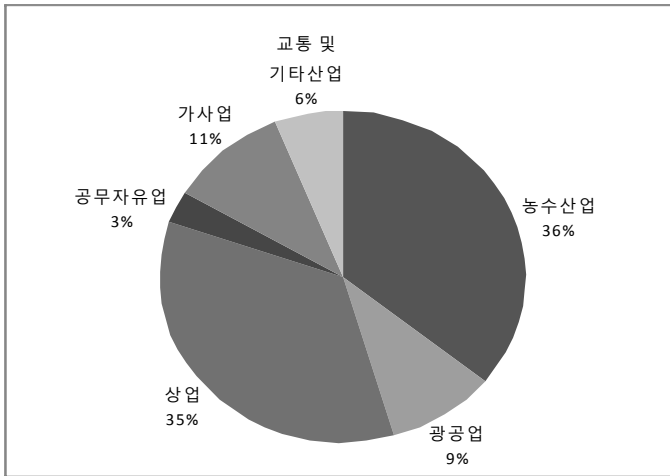
5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355~358쪽.

54)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 (1930년도)

55) 김경일, 위의 책, 355쪽

56) [표] 1930년대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업종비율

[그림] 이혼여성의 취업업종별 비율



이러한 상황은 이혼여성의 경우 남편이 없이 농촌에 남아 생계를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로 나와 노점상이나 행상, 집객업 등을 포함하는 상업과 가사업 등 비교적 자본이 크게 필요치 않거나 주거까지 의탁 가능한 분야에 다수 종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단편적이지만 자료에 나타난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각 업종에 종사하였던 이혼여성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우선 농수산업을 살펴보면 이 분야에 종사하였던 이혼여성의 사례는 자료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 혼자서는 소작도 잘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농촌에

직업	혼인상태별(%)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농수산업	63.4	83.4	73	35.8
광공업	12.6	7.9	8.1	9.6
상업	6.5	5.7	10.2	34.9
공무자유업	1.5	0.3	1.1	3.1
가사업	14.9	0.8	3	10.6
교통 및 기타산업	1.0	1.8	4.7	6.0

* 자료: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 (1930년도)(김경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354쪽 재인용.)

남은 이혼여성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다면 남의 집 품을 파는 것을 통해 근근히 생활해 나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농사지어 봐야 남는 것은 빗박에 없는 피폐해가는 농촌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러한 생활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도회로 가면 돈 벌고 잘 산다”는 소문과 감언이설에 이끌려⁵⁷⁾ 생계를 위해 그리고 이혼녀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로 나온 이혼여성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상업 활동이었다. 앞서 제시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점이나 행상, 여점원 등 상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혼여성들은 농수산업 종사자만큼이나 많아서 35%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황해도 살던 임형선의 모친은 1920년대 후반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소박맞고 가출을 감행하였다. 1930년대 초 임형선이 서울로 간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행상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한다.⁵⁸⁾ 이 당시 여성들의 행상의 품목은 다양했다. 남편이 작부와 함께 달아나버려 홀로 된 원산 살던 조씨는 떡, 빈대떡, 국수, 팔죽 장사를 해서 식구들을 부양하였다.⁵⁹⁾ 상업에 종사한 이혼여성들 중에는 꽤나 성공한 사례도 보인다. 축첩한 남편에 의해 문전축출 당하였으나 친정에서도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쫓겨난 ‘자유星’이란 필명의 여성은 오빠에게 자금을 얻어 국수장사를 시작, 결국 성공하여 “수천원 저금”의 부자가 되었다.⁶⁰⁾ 이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는 여성들도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여성은 오빠로부터 쫓겨 “팔십원 자

57) 『농촌소부를 유인, 도회로 가면 돈 벌고 잘 산다고』 『동아일보』 1939.3.29.

58) 임형선·이중수·양충자 구술, 『모던걸, 치장[治裝]하다(구술사료선집 6)』 국사편찬위원회, 2008, 10~11쪽.

59) 『放蕩한 男子에 抵抗 팔죽 빈대떡 장사로 一家를 復興시킨 寡婦들 勤勞生活로 子女들의 教育까지, 春節 元山에 明朗한 뉴스』 『동아일보』 1936.2.29.

60)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문전축출당하고 팔십원 자본의 국수장사 지금은 수천원저금의 자유생활(國境雪地자유星)』 『동아일보』 1929.11.18.

본”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선택받은 여성이었다. 밑바닥 삶으로부터 시작해 성공한 여성의 케이스를 찾기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의 자본이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상업활동 다음으로 눈에 띄게 이혼여성들이 많이 종사한 업종은 가사업이었다. 오갈 곳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주거까지 제공하는 가사업은 이혼여성에게는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었다. 신분제의 해체와 도시생활의 확산에 따른 가사노동의 상품화 및 가옥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비나 행랑살이를 대체하여 임금을 받는 가사사용인의 고용이 증가해갔다. 특히 1920년대 말 이후 가사사용인 고용시장은 크게 활성화되어, ‘어멈 전성기’라고 부를 정도였다.⁶¹⁾ 1930년 국세조사보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사사용인 12만여명 중 여성은 9만 여명이었는데, 이 중 이혼여성은 3천여 명 정도였다.⁶²⁾ 이혼을 불명예로 여겨 스스로를 과부라 칭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이혼여성의 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가사사용인에 대한 수요는 조선인 가정뿐만 아니라 일본인 가정으로부터도 있었다. 인 사상담소를 통해 가사사용인으로 고용되었던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혼여성들이었고, 이들은 보수도 보수지만 체면문제로 조선인가정보다 일본인가정을 더 선호했다. 일본인 가정의 ‘어멈’으로 취업한 여성 중 이혼여성은 30~40%를 점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들은 “구식가정에서 자라 나서 구식가정으로 시집을 갔다가 가정이 싫다하면 자기 마음으로는 개가도 가고 싶으나 시집과 친정의 체면관계도 있으므로 마침내 차라리 모르는 타향으로 달아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 그들은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자기의 종적을 다른 사람이 알까 하는 것이 근심의 초점이 되어 한번 어느 가정이든지 소개가 되면 비교적 오랫동안 있다”

61) 이아리, 『일제하 주변적 노동으로서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양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8~17, 38쪽.

62)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보고』 (1930년도) (이아리, 위의 논문, 42쪽 재인용.)

고 전한다⁶³) 일본인 가정에서의 ‘조선어멈’에 대한 수요는 1930년대에 지속되었고 불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⁶⁴) 그러나 일본인 가정에서 어멈으로서의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어를 잘 못할 경우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고, “다다미방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한 것”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 그리고 “불량한 주인”을 만나 “여자의 생명과 같은 무엇을 유린”당하는 일 등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⁶⁵)

한편, 도시로 나온 이혼여성들 중 일부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1930년대 일본의 본격적인 ‘조선공업화 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각 산업부문에 일본 독점자본이 대량 진출하였고, 그에 따라 공장 및 공장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기계를 채용한 대규모 공업의 지배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공업화의 진전은 여성노동자의 공업부문으로의 참여를 증대시켰다.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1930년대 대규모 방직공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전체 노동자의 30%에 이른다.⁶⁶) 이렇게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혼여성이 생계를 위해 공장노동자가 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앞서 소개했던 이정희는 재혼이 싫어서 친정을 떠나 제사공장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공장 노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이정희가 묘사한 공장에서의 생활은 “매일 일하는 시간이 열세시간이나 되고 감독이 어찌나 심한지 징역을 살아도 이것 보다는 더 부자유하지는 아닐 것”이며,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결국 이정희는 스스로를 “별을 보지 못하고 짐을 많이 씌워서 얼굴은 배꽃 같고 손 사이는 흡사히 움을 올린 사람같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있다.⁶⁷)

63) 『조선어멈(三) 깨어진 도회동경몽, 이혼여자도 다수』 『동아일보』 1928.3.15.

64) 『세말의 가두(三) 임시구인도 別無 예년 보담 오할격감』 『동아일보』 1929.12.24.; 『구직수는 일만사천 취직은 오천사백』 『동아일보』 1931.1.31.; 『여자는 오할여취직 남자는 불과 일이할』 『동아일보』 1933.9.7.

65) 『조선어멈(一) 취직난 몰르고 작년에만 천여명』 『동아일보』 1928.3.13.

66)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 노동: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17쪽.

67)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남편의 소박맛고 만리 타향와서 직공생활』 『동아일보』

마지막으로 공무자유업을 살펴보자. 공무자유업에 속하는 직종은 대개 교육과 언론, 예술, 종교, 의료 등이다.⁶⁸⁾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930년대 전·중반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전체 취업 여성에서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 데 비해, 이혼여성의 경우 3%에 달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경제적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신여성조차 이혼을 꺼린다고 얘기되던 시절이었지만, 신여성 중에는 이혼을 하고 직업을 얻어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조선일보 「부인공개장」란에 투고한 함○숙이라는 ‘신여성’은 연애 결혼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여성과 외도하며 이혼을 강요하자, 결국 이혼을 단행하고 유치원 보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⁶⁹⁾ 한편 남편에게 버려진 ‘구여성’이 공부에 매진 결국 ‘신여성’이 되어 공무자유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⁰⁾ 무식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구여성들은 신교육을 통해 신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¹⁾

그러나 경제적 침체에 따른 실업난 속에서 마땅하게 취직할 곳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1935년 조선중앙일보의 고민상담란에는 투고한 한 이혼여성은 남편의 학대로 이혼하였으나 취직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죽음만을 생각하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 놓고 있었다. 이 여성은 “타

1929.11.19.

68) 김경일, 앞의 책, 348~349쪽.

69) 함○숙, 「부인공개장-이러한 남자들은 하로박비 각성하라」, 『조선일보』 1929.10.12.

70)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현진건의 형수였던 ‘구여성’ 윤덕경은 남편 현정건이 기생 현계옥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러 중국으로 탈출하자 서울로 와서 태화여자학원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자수선생으로 교편을 잡았다. 정오성, 「윤덕경 여사 순종비화」, 『신여성』 1933.3.

71) 「소박덕이 삼백명, 여자교육협회로 울며 호소, 주목할 기혼남자의 이혼병」, 『동아일보』 1922.12.21.; 「유명하든 완고가 사위 말에 각성, 공부를 안시키면 리혼한다는 통에 강습소를 설치하고 교수」, 『조선일보』 1925.7.17.; 「리혼한다는 남편 말에 푼 전업시 서울로, 근화녀학교 삼년급생, 박금동의 눈물겨운 말」, 『동아일보』 1926.6.4.

오르는 가슴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어디 마음이나 부칠까 해서” 취직자리를 알아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 자체를 위해 취업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²⁾ 그러나 생계 자체가 곤란했던 여성들 중에는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어 결국 유곽으로 팔려가는 여성들도 있었다.⁷³⁾

취업을 통해 어렵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갔던 과정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는 빈곤 상황에 적응해 간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자존 의식 또한 내재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자유星’이란 필명을 가진 국수장수는 “오냐 세상은 무엇보다도 황금의 힘이다. 네 아무리 잘났던 들 돈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못할 것은 사실이다. 나도 이제부터 노력하여 너(남편)의 박대를 복수하겠다”고 결심하고 장사에 매진하였다.⁷⁴⁾ 이 여성이 장사에 매진할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한 생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남편의 박대에 복수’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는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또, 1942년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아들과 결혼했으나 가난한 미용사라는 이유로 시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남편에 실망한 임형선은 시댁을 나와 서울로 와서 홀로서기를 감행한다. “내가 손만 놀리면 어머니, 동생 실컷 벌어 살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시집에 돈을 받아서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선택을 “현명”한 선택으로 기억하는 임형선의 사례 역시 이혼여성의 취업 이면에 놓여 있는 자존의 욕구를 보여준다.⁷⁵⁾

72) 「리혼당하고 취직도 안돼」, 『조선중앙일보』 1935.11.6.

73) 「嫁家族冷待에 脫出 賣笑婦로 轉身, 新版「노라」行狀記」, 『동아일보』 1939.1.27.

74) 「직업부인이 되기까지; 문전출출당하고 팔십원 자본의 국수장사 지금은 수천원저금의 자유생활(國境雪地자유星)」, 『동아일보』 1929.11.18.

75) 임형선·이중수·양충자 구술, 앞의 책, 97쪽.

3. 이혼여성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법정 소송

식민지시기 이혼은 여성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당한 여성이 빈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젠더불평등한 식민지 법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은 남편이나 시집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자녀를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01년생인 경북 예천군 출신의 권명완은 스무 살에 혼인하여 남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이 축첩하자 갈라서 서른 살 무렵부터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남편은 돈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바느질해서 자식을 다 키워냈다.⁷⁶⁾ 이렇게 별거나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여성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점차 별거나 이혼 후의 생계를 위해 부양료나 위자료를 남편과 시댁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여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 부양의 요구

남편이나 시부모가 부양료나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 소박당하거나 이혼당한 여성들은 부양료나 위자료 청구를 통해 남편과 갈라선 이후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들은 대체로 남편의 유기로 사실상의 이혼상태였지만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거하면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였다. 이를테면, 1921년 강원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전일원이라는 여성은 남편이 축출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 남편의 동거 거부로 인해 “노동이

76) 전경옥·김은실·정기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권명완 최숙자』, 『한국여성인물사 (한국여성근현대사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181~188쪽.

나 하여 홀로 먹고 살려고 하나 몸에 병이 있고 약해야 그도 못하겠는 고로” 한달에 25원씩 쳐서 보통사람의 한평생을 육십세까지 잡고 생활비를 청구하였다. 남편은 매년 천석이상을 추수하는 부자였다.⁷⁷⁾ 또, 1925년 경성부 살던 김간난은 자신을 버리고 여교원과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은 보통학교 훈도인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⁷⁸⁾ 이와 달리 이혼을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이혼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예컨대, 1927년 경기도 양주군 사는 한금순은 남편을 걸어 이혼급 위자료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0년 간 “부부간의 협력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남편은 재산이 늘자 첩을 얻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이혼을 강요, 한금순을 축출하였다. 이에 한금순은 “남편으로서 처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처권을 유린”하였다는 이유로 이혼과 함께 “정신상과 육체상에 다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였다.⁷⁹⁾ 이렇게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거하면서 부양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양료나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⁸⁰⁾ 조혼으로 사실혼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혼 상태에서 버림받은 여성들은 ‘정조유린’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⁸¹⁾ 이러한 남편에 대한 부양과 위자의 요구는 단지 도시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어서 조선일보는 1925년 강원도 회양군에서 자기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도하면서, “여자의 권리사상, 강원도 회양 두메에까지 들어갔다”고 평하였다.⁸²⁾

77) 「부양료 청구」, 『동아일보』 1921.9.22.

78) 「부양료청구소, 부정한 남편에게」, 『동아일보』 1925.1.9.

79) 「妻權 蹂躪에 離婚」, 『동아일보』 1927.3.10.

80) 조선민사령 제2차 개정으로 1923년 7월부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만으로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았다.

81) 정조유린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소현숙, 「정조유린담론의 역설, 1920~30년대 정조유린위자료청구소송과 정조담론」, 『역사문제연구』 28호, 2012 참고.

82) 「여자의 권리사상-강원도 淮陽 두메에까지 드러갔다, 버리는 남자에게 십년간 부

혼인신고의 유무나 여성이 이혼을 원하는가의 유무에 따라 부양료나 위자료로 명목은 달랐지만, 대체로 이러한 금전적인 요구는 별거나 이혼 이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중상층의 이혼당한 아내들이 당대의 도덕관념과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다시 재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버려진 여성에 대해서는 남편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신여성 황신덕은 신여성조차도 남편의 이혼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면서 만약 남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려면 먼저 아내의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³⁾

이러한 아내들의 요구에 응하여 별거나 이혼을 요구할 때는 생계를 보장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정작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고 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신문의 독자상담란에는 남편의 ‘자유이혼’ 강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투고가 심심치 않게 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고민에 대해 상담자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먼저 타고 이혼해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⁸⁴⁾ 위자료를 받는 대가로 이혼을 해주지만 결국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지 “결코 이혼을 먼저 해주지는 마십시오. 생활비를 충분히 받은 후에 해 주시지요”라는 충고를 하거나 이혼을 해주고는 위자료를 받기 어려우니 “정신 차리고 꼬임에 빠지지 맙시다”고 충고하는 상담기사들이 자주 실리고 있다.⁸⁵⁾ 부양료나 위자료 청구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 지켜지지 않은 약속 때문이기도 하다.

재판정에서 남편들은 불화의 원인이 아내 쪽에 있다거나 아내가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오히려 유기당한 것이라고 책임을 아내 쪽에 돌

양료청구소송, 『조선일보』 1925.7.11.

83) 『新兩性道德의 提唱』, 『삼천리』 제6호, 1930.5

84) 『명암의 십자로-졸업을 기다렸더니 리혼한다는 첫인사』, 『조선중앙일보』 1935.4.17.

85) 『명암의 십자로-아이까지 나었으나 소박맞는 구녀성』, 『조선중앙일보』 1935.4.10.; 『답답한 사정-위자료도 안주고 이혼만 해내랍니다』, 『조선중앙일보』 1936.2.9.

리면서 부양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1932년 아내가 제기한 부양료소송의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남원의 부호 박희옥은 가정불화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고 동거를 거절하고 별거하는 아내를 위해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서 아내가 동거를 거절한다고 부양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아내가 남편과 불화하여 동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불화의 원인이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료를 내어줄 의무가 있다”고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⁸⁶⁾ 이러한 판결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남편은 별거중인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남편의 부양책임은 별거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결국, 1936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이혼을 당한 처는 이혼 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까지 전부(前夫)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가 주어있다”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⁸⁷⁾ 이 개정안은 결국 전쟁으로 인해 법률로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혼당한 처에 대한 전남편의 부양 의무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산권의 자각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여성들의 부양료·위자료 청구 속에는 친정에서 가져간 재산과 결혼생활동안 형성된 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요구의 의미도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식민지시기 법제도 하에서 기혼 여성은 “법적인 무능력자”로서 취급되었고 중요한 법률행위는 모두 남편의 허가

86) 『雲峯의 百歲長者 夫婦間法廷爭訴, 扶養料와 親權喪失로, 全州法院稀有公判, 『동아일보』 1932.5.18; 『扶養料는 勝訴 親權喪失敗訴, 南原富豪爭訴事件, 『동아일보』 1932.5.27; 『暴君男便 制裁하는 高等法院의 新判例, 가정불화책임이 어디 있든지 別居하는 안해도 扶養할 義務, 井邑郡泰仁面 朴禧沃의 처 扶養料청구소송사건, 『동아일보』 1933.2.13.

87) 『女性萬歲 改正되는 民刑法 詐欺結婚의 防遏과 職業女性貞操擁護 서로 이혼을 한 뒤일지라도 前夫에게 扶養責任, 『매일신보』 1936.5.31.

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또, 처첩이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었으며, 처첩 특유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처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사용수익을 할 수 있었고 다만 남편은 처의 승낙이 없으면 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⁸⁸⁾ 그러나 남편은 처의 승낙이 없으면 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남편은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처의 승낙이 없었다고 해도 막상 남편이 재산을 팔아버리고 나면 소송을 해도 그 재산을 찾기가 어려웠다.⁸⁹⁾ 그리하여 “시골서 딸을 시집보낼 때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소나 말을 딸에게 주어서 보내지만” “그 소나 말이 결국 딸의 소유가 못되고 곧 남편의 소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혼을 당해도 가져간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었다.⁹⁰⁾

이러한 불평등한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이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생활동안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그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일찍부터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1914년 경기도 부천군 사는 박태양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청구소송에서 “원고되는 박태양은 명치 사십이년 삼월 경에 피고 되는 이경수와 결혼 동거하는 동시 원고는 자기 친정에서 금화 육백원을 가지고 와서 그 남편에게 주고 가옥전토를 사서 남편의 명의로 관리하여 생활하여 오더니 천만 뜻밖에 작년 음력 삼월경에 무단히 원고를 쫓아내며 심지어 의복 집물까지 빼앗고 축출하므로 갈 데 없는 원고의 신세는 가련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동가식서 가숙하여 가며 도

88) 이태영, 『일제 강점기 여성의 법적지위 I·II』 김영덕 외 공저, 『한국여성사(개화기~1945)』 이화여대 출판부, 1972, 125, 153~154쪽.

89)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관리권을 제한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 ‘준금치산 선고’를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준금치산 선고의 남편, 안해재산의 관리권을 상실』 『동아일보』 1938.9.9.

90) 『이동좌담<내가 이상하는 남편>』 『신여성』 1931.12

로에 방황하는 가운데 거의 죽을 모양인고로, 생활비로 매일 이십오전식 한 십년 작정하고 계산 금 구백원을 청구”하였다.⁹¹⁾ 또, 1917년 경성부 사는 박순홍은 가세가 적빈하였으나 자신이 술장사를 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가세가 풍족하게 되자 남편이 축첩을 하고 이혼을 강요하며 축출하자 부양료를 청구하였고,⁹²⁾ 1922년 경성부 사는 김완홍은 가난했으나 결혼 20년동안 살림을 일궈 삼천석의 부자가 되자 18세 어린 여성을 첩으로 들이고 민적에 본처로 올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⁹³⁾ 법정에서 이들 여성들은 현재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거나 “자신이 모은 재산” 혹은 “자기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⁹⁴⁾ 비록 명목은 부양료나 위자료였으나 법적으로 재산분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가져오거나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적 이혼 제도와 관념이 확산되어 간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이혼 여성의 빈곤 실태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 보았다.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던 식민지배 하에서 이혼은 더 이상 하층의 문화가 아니었다. 식민지 경제정책의 결과 심화된 빈곤상황에서 하층의 이혼이 양산되었다면, ‘자유이혼’의 유행 속에서 중상층에서도 이혼이 속출하였다. 남성에게 이혼이 사회적 낙인이

91) 『생활비로 구백원』 『매일신보』 1914.4.7.

92) 『부양료 칠천원, 남편에게 청구』 『매일신보』 1917.12.22.

93) 『一萬三千圓의 扶養料請求, 이십여년 동거한 안해가 재혼한 남편을 걸어』 『동아일보』 1922.6.11.

94) 『병어리 남편 섬긴지 卅六年만에 破鏡歎』 『동아일보』 1930.2.1; 『축첩한다고 위자료 청구』 『동아일보』 1936.1.24.

나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는 계기가 아니었던 것과 달리, 여성에게 이혼은 계층을 불문하고 ‘소박덕이’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과 직결된 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이혼의 빈곤에는 여성에게 차별적이었던 당대의 사회문화적 담론과 법제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여성에게는 일부종사와 출가외인이라는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여 재혼이 어려웠지만, 남성에게는 재혼은 물론 축첩이나 간통조차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불평등한 성규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재산분할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불평등한 이혼법 등 1920~30년대를 특징 지웠던 젠더 불평등의 현실은 이혼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혼여성들은 회피할 수 없었던 이러한 빈곤의 현실에 대응하여 생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행하였다. 친정에 의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혼이나 첩살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되긴 어려웠다. 학대받았던 결혼생활에 대한 혐오 속에서 공장노동자, 행상, 어머, 유치원 보모 등 노동을 통해 자활의 길을 모색하는 여성들도 나타났다. 상업활동을 통해 크게 성공했던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성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노력 이면에는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자존을 위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더욱이 생계를 위한 적극적인 추구 속에서 여성들은 별거나 이혼 후의 생계를 위해 남편이나 시댁에 부양료나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전적인 요구 속에는 당시 식민지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에 대한 요구 또한 반영되어 있었다. 즉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생활동안 축적된 재산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권리의식이 부양료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식민지시기 빈곤문제에 관해서는 식민농정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과 도시하층민의 양산이라는 계급적인 관점에서만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시기 이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

면, 빈곤은 단순히 계급적 착취뿐만 아니라 젠더위계질서가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겹겹이 에워싼 젠더불평등 속에서 이혼 여성은 단지 죽지 못해 산 '희생자'였던 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과 자존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역사적 행위자'였다. 이들 여성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거나 법정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기울였던 노력은 단순히 어쩔 수 없는 빈곤 상황에 적응한 결과만은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혹은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자존 의식이 발현된 결과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曙光』, 『신여성』, 『여성』, 『삼천리』, 『별건곤』, 『신동아』 『朝鮮彙報』, 『司法協會雜誌』

2. 단행본

강만길, 『일제 강점기 빈민생활사』 창작과비평사, 1987.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김영덕 외 공저, 『한국여성사(개화기~1945)』 이화여대 출판부, 1972.

나영균, 『일제 강점기 우리가족은』 황소자리, 2004.

심훈, 『(한국현대소설총서22) 직녀성』 한국문화사, 1987.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이태영, 『韓國離婚制度研究-특히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원,

1957.

임형선 · 이종수 · 양충자 구술, 『모던걸, 치장[治裝]하다(구술사료선집 6)』
국사편찬위원회, 2008.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전경옥 · 김은실 · 정기은, 『한국여성인물사(한국여성근현대사1)』 속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07.

정광현, 『韓國家族法研究』 서울대출판부, 1967.

3. 논문

강병식,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및 출산 실태 연구』 『사학지』 제
28집, 1995, 419~447쪽.

권희정, 『식민지시대 한국 가족의 변화: 1920년대 이혼소송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1집 2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5, 35~62쪽.

吉川絢子, 『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1910년대를 중심으로-』 『법
사학연구』 제44호, 2011, 171~209쪽.

김명숙, 『일제 강점기 여성 출분 연구』 『한국학논총』 제37집, 국민대 한국
학연구소, 2012, 513~533쪽.

문소정, 『일제하 한국농민가족에 관한 연구-1920~30년대 빈농층을 중
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서병한 · 한상욱, 『한국 법제사상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천』 『여성문제연구』
12,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83, 5~23쪽.

석재은,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권 2
호, 2004.5, 167~194쪽.

소현숙,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 『사학연구』
제104호, 2011, 123~164쪽.

소현숙, 『고독한 외침-식민지시기 아내/며느리에 대한 ‘사형(私刑)’과 법정

투쟁』 『역사비평』 104, 2013, 387~412쪽.

소현숙, 「수절과 재가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과부담론」 『한국사연구』 제164호, 2014, 59~89쪽.

소현숙, 「정조유린담론의 역설, 1920~30년대 정조유린위자료청구소송과 정조담론」 『역사문제연구』 28호, 2012, 191~222쪽.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박사학위논문, 2013.

이아리, 「일제하 주변적 노동으로서 ‘가사사용인’의 등장과 그 존재양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정주영, 「식민지시기 이혼소송의 법 적용 실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8.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과 역사』 제9집, 2008, 79~119쪽.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현실』 제75호, 2010, 93~125쪽.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들」 『여/성이론』 2012, 104~120쪽.

홍양희, 「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민법」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 2005, 121~145쪽.

Abstract

Seeking for a Way of Survival and Self-respect: Women's Divorce and Poverty in Colonial Korea in the 1920s and '30s

So, Hyunsoog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conditions of divorced women and their efforts to step out of it in the 1920s and 1930s when the modern divorc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idea of 'free divorce' spread.

After the 1920s, when the colonial rule brought about rapid change in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divorce was not a culture of the lower class anymore. If divorce in the lower class increased due to exacerbated poverty under the colonial economic policy, divorce in the middle and upper class appeared in the trend of 'free divorce'. While divorce didn't cause a social stigma and bring about poverty for men, it did for women. Gender discrimination in sexual norms, legislation and the labour market deepened poverty of the divorced women.

The divorced women tried to overcome this poverty in many diverse ways such as remarriage, becoming a concubine, working as a factory labourer, a small trader, a housemaid, and a kindergarten nanny. Although their choices were not the same, the choices held not only the will to live but also the desire to defend their pride in the inside. On the other hand, they didn't hesitate in active pursuit of a livelihood by filing consolation or alimony requirement suits. In these suits they even demanded their right for

distribution of property which was not acknowledged by colonial laws at that time. Although gender inequality was spread, divorced women were not victims, but 'historical agents' who were struggling to defend their survival and self-respect by various methods.

Key words: Divorce, Divorced women, Consolation requirement suits, Alimony requirement suits, Poverty, Female labor, Remarriage, the 1920s and '30s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